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

의 안 번 호	172
------------	-----

제출년월일 : 2004. 1.

발 의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정이유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고 규 강 교육위원외 4명이 발의
- 학교급식법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함은 물론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함.(안 제3조)
- 교육감은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여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하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게 재정지원을 요청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고 우수농산물이 우선 사용되도록 임무를 부여(안 제4조)
- 지원방법을 예산으로 지원하거나 식재료의 일부를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청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을 설치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 지원대상학교와 식재료 공급자의 의무를 정하여 학교급식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안 제9조, 제10조)
- 교육감은 위탁급식을 학교직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고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그 실태를
매년 교육위원회에 보고(안 제11조)
- 지원대상 학교장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으로
참관인을 구성하여 식재료 검수과정에서부터 배식과정에 이르기까지
참관하도록 함.(안 제12조)
- 교육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학교와 식재료 공급자의 식재료에 대하여
수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무를 위반하였
을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3조)
-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

제정안 : 불임과 같음

참고사항

- 관계규정 : 불임과 같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 도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우수 농·축·수산물(이하 "우수농 산물"이라 한다)을 사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함은 물론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②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 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충청북도에 소재한 학교로서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수립 실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학교 급식에 필요한 경비중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 위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원대상학교 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지원·요청하여 지원을 받는 등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급식대상학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 교육감은 지원대상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식재료의 일부를 현물 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우수농산물 사용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학 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교육청을 통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당연직 위원 2인과 위촉직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교육감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학부모단체

2. 교사단체

3. 농민단체

4. 시민단체

5. 충청북도영양사회

6. 식품영양에 전문지식이 있는자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평생교육체육과 급식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학교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3. 식재료 구입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지원대상학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학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학기당 지원금 사용내역을 관할 교육청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식재료 공급자는 학교급식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급식의 적영화) ① 교육감은 위탁급식을 학교작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탁급식을 적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하며 그 실태를 매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학교급식 참관인 구성) ①지원대상학교의 장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으로 참관인을 구성한다.

② 총관이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찰한다.

1. 식재료 검수과정
 2. 조리과정
 3. 식재료 및 시설설비 위생관리
 4. 배식과정

제13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필요시 식재료 공급자가 공급하는 식재료 및 지원대상학교가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하여 수시 조사할 수 있고 부당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시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학교가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교육감은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록

이 조례는 200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우수농산물 사용 소요경비 지원신청서

지 원	명 칭		주 소	
대상자	대표자성명			
급식시설			설비규모	
학 생	총 학생수		명	
	급식대상학생수		명	
우 수	총 소요경비		원	
농산물 사 용	지원신청금액		원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 사용에 따른 소요경비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확인 ○ ○ 교육장 (인)

년 월 일
(지원대상학교장) (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관 계 규 정

□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및 관리기준) ①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학교급식의 내용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급식관리에 있어서는 위생과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부담) ① 학교급식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와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경비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학교급식의 실시범위) 학교급식 실시 학교는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되, 미리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급식학교”라 함은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로 지정한 학교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0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동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